『司法試驗法 및 同法施行令制定(案)』에 대한 建議書

－環境法 과목을 司試 1차과목에 포함시키기 위한－

韓國環境法學會

새로운 천년을 좌우할 막중한 사법시험제도를 개선하고자 애쓰고 계시는 貴部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1C 환경의 세기를 맞이하여 본학회가 貴部에 『司法試驗法 및 同法施行令制定(案)』(法務部公告 제 2000-30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건의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司法試驗法施行令(案)』은 복잡한 현행 시험과목을 법률과목 중심으로 축소하여, 사법시험 응시자는 제1차시험에서 필수과목인 헌법·민법·형법·영어와 선택과목(형사정책·법철학·국제법·노동법·국제거래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 중 택일)중1개 과목 등 5개 과목를 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고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司法試驗法施行令(案)』은 시대환경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하고, 종전의 과목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1차 시험과목의 축소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 즉 직능분야의 세분화·전문화에 따라 요청되는 전문법분야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에는 역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극히 미진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지니는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누차 지적되어 왔으며, 7월 21일의 공청회에서도 『司法試驗法施行令制定(案)』의 미비점으로

동일하게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종래 학계와 실무법조계는 21C 환경법시대를 맞이하여 이미1992년 사법시험과정 개편때부터 환경법이 전문법조인 양성에 반드시 필요하며, 사법시험과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본 학회는 이번에도 동일환 취지에서 환경관련법 과목이 사법시험 제1차시험 선택과목에 포함되도록 사법시험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이를 강력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만, 환경관련법 전체가 시험과목이 될 경우 출제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타 법률과목과의 균형도 꾀하여야 하므로 그 출제범위를 다음의 5개 법률에 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① 環境政策基本法
② 환경에관한경향평가법
③ 水質環境保全法
④ 土壤環境保全法
⑤ 廢棄物管理法

다시 한번 사법시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貴部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아무쪼록 이번『司法試驗法 및 同法施行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안되어 그 간 사법시험제도의 결함으로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알소되어, 사법제도 개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8월 28일

韓國環境法學會 회원을 대표하여

韓國環境法學會 會長 李英基

法務部長官 귀하